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81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차규근・김재원・김준형

이해민 • 김선민 • 윤종오

정춘생 • 황운하 • 서왕진

백선희 • 신장식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절차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부응하여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각각 근거하여 사법의 개방성과 국민적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재판의 간접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허가 여부를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이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공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귀속시키

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59조).

이중 내란의 죄는 단순한 형사범죄의 범주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입헌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헌 정질서 파괴범죄로서 그 공적 성격과 위중함은 일반적 범죄와 명확히 구별되고, 권력기관이나 국가의 핵심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조차 예외로 두고 있다 는 점에서 공익적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 역으로 그 특수성과 중대성이 헌법적 차원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음.

따라서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여 내란 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실체적 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단순한 정보의 소비를 넘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 헌정체제하의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사법부가 단지 법정 내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내란죄 사건의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이에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은 민주 헌정질서의 주권자이자 내란

범행의 피해자인 일반 국민이 그 재판의 전 과정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쉽게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함(안제59조의2제1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금지"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으로, "하지 못한다"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녹화·촬영·중계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판 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③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내란의 죄에 대한 특례) 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87조 내지 제91조의 죄에 대한 재판은 중계방송을 하여야한다.

② 전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제5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녹화 등의 <u>금지</u>) 누구든지	제59조(녹화 등의 <u>허가</u>) <u>①</u>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u>안에서 녹화·촬영·</u>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중계방송
의 행위를 <u>하지 못한다</u> .	<u>하려면 재판장의</u>
<신 설>	<u>허가를 받아야 한다</u> .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녹화・촬영・중계
	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
	<u>다.</u>
<u> <신 설></u>	③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59조의2(내란의 죄에 대한 특
	례) 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형법」 제87조 내지 제
	91조의 죄에 대한 재판은 중계
	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제
	5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